

서울특별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94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일자 : 2019년 3월 4일

제안자 : 도시안전건설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안 제3조 및 제7조의 ‘재해영향평가등’이 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서 정한 약어인 점을 감안하여 안 제3조의 ‘재해영향평가등’을 ‘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(이하 “재해영향평가등”이라 한다)’로 수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“재해영향평가등 협의”에서 ‘재해영향평가등’에 대한 약어규정을 명확히 함.(안 제3조)

서울특별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 중 “재해영향평가등 협의”를 “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
가(이하 “재해영향평가등”이라 한다) 협의”로 수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
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
로 한다.

제1조 중 “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”를 “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”로
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”를 “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
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전재해영향성검토”를 “재해영향성검토
및 재해영향평가(이하 “재해영향평가등”이라 한다) 협의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통할한다”를 “총괄한다”로 한다.

제6조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한다.

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 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·의결에서 제
척(除斥)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등(이하 이 조에서 "해당 안전"이라 한다)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·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호 및 제2호에서 같다)가 되거나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
2.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
3. 위원이 해당 안전에 관하여 용역, 자문,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

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(回避)하여야 한다.

제6조의3 (위원의 지명 철회 및 위촉해제)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
3. 직무 태만, 품위 손상,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4.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
5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
제7조 중 “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요청서”를 “재해영향평가등 협의요청서”로 한다.

제8조 본문 중 “대하여는 예산”을 “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<u>서울특별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</u></p>	<p><u>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</u></p>
<p>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<u>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</u>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 (목적) ----- ----- <u>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2조 (구성) ①서울특별시 <u>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</u>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.</p> <p>②위원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6조의 규정에 <u>의한</u>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방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,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</p>	<p>제2조 (구성) ①----- <u>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②----- ----- ----- <u>따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제3조 (기능) 위원회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요청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
제4조 (위원장) ①위원장은 물순환 안전국장으로 하고,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.

② (생략)

제6조 (회의)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위원장이 의장이 되고,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개의하고,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<신설>

제3조 (기능) -----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(이하 "재해영향평가등"이라 한다) 협의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4조 (위원장) ①-----

----- 총괄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6조 (회의) -----
----- 따른

제6조의2 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·의결에서 제척(除斥)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이

나 해당 재해영향평가등(이하 이 조에서 "해당 안전"이라 한다)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·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호 및 제2호에서 같다)가 되거나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
2.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
3. 위원이 해당 안전에 관하여 용역, 자문,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

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(回避)하여야 한다.

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·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---- 대하여는 「서울특별시
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
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-----

-----.